서럽다, 월급쟁이로 산다는 것

기름값·밥값 치솟는데 급여는 '제자리'…식후 커피 한 잔 '사치'·경조사비 5만원 '눈치'

광주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 박모씨는 카톡 문자가 울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란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알리는 지인들의 문자가 거의 매주 날아와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라며 "결혼식장 밥값도 대부분 5만원이 넘는다길래 지인 결혼식에 가서도 축의금 5만원 넣고 눈치 보여 밥도 못 먹고 나왔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요즘 들어 점심 도시락을 싸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다. 올봄 들어서 회사 주변 식당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1만원 아래로 점심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김씨는 "분식집이나 우동집 등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은 돈대로 들고 영양은 부실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월급은 그대로인데 출퇴근 차량 기름값도 만만치 않아 이러다 내 집 장만 가능할까 두렵다"고 했다.

광주 직장인들 사이에서 물가 인상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비교해 집값은 물론 물가 대부분이 저렴한 곳으로 알려진 광주이지만, 전방위적 물가 상승으로 "허리가 휜다" "저축은 한 푼도 못하고 있다" "기름값이 비싸서 주말 나들이도 삼간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ℓ당 2000원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광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2035.1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592원) 대비 27.83% 올랐다. 2030 직장인들이 즐겨 타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연료인 경유의 경우, 광주 평균 가격은 11일 기준, ℓ당 2032.7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389원)와 비교해 46.34% 올랐다. 기름값 부담에 주말 나들이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도 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이유다.

광주시내 식당 요금이 줄줄이 오른 것도 직장인들에게는 부담이다.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올봄부터 식당 한 두 곳이 가격을 올리더니 요즘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다며 "만원으론 이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소연한다.

월급봉투가 얇은 2030 직장인들은 "점심 먹고 동기들과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는 게 직장 생활의 낙이었는데 '이젠 커피 마시는 것도 일종의 사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급기야 한두달 전부터는 점심(런치)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더해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냉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해 5월 7800원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8600원으로 800원(10.2%) 올랐다.

같은 기간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2400원→2900원(20.8%), 짜장면 5500원→6100원(10.9%), 삼겹살(200g, 식당 1인분)은 1만2956원→1만4044원으로 1088원(8.3%) 올랐다. 서민들의 외식 단골 메뉴인 삼겹살의 경우, 4인 가족이 식당에서 4인분을 먹고 술과 공깃밥·된장찌개·냉면 등 추가 주문한다면 외식비는 10만원을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예식장 식대가 1인당 5만원을 넘어선 곳이 상당수라는 점도 직장인에게는 부담이다.

광주시 광산구 D예식장은 지난해 11월 1인당 4만5000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4만8000원을 받고 있다.

이 예식장은 식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하반기 중 식대 인상을 고려 중이다. 광주시 서구 대형 예식장으로 꼽히는 W웨딩홀은 1인당 5만1000원의 식대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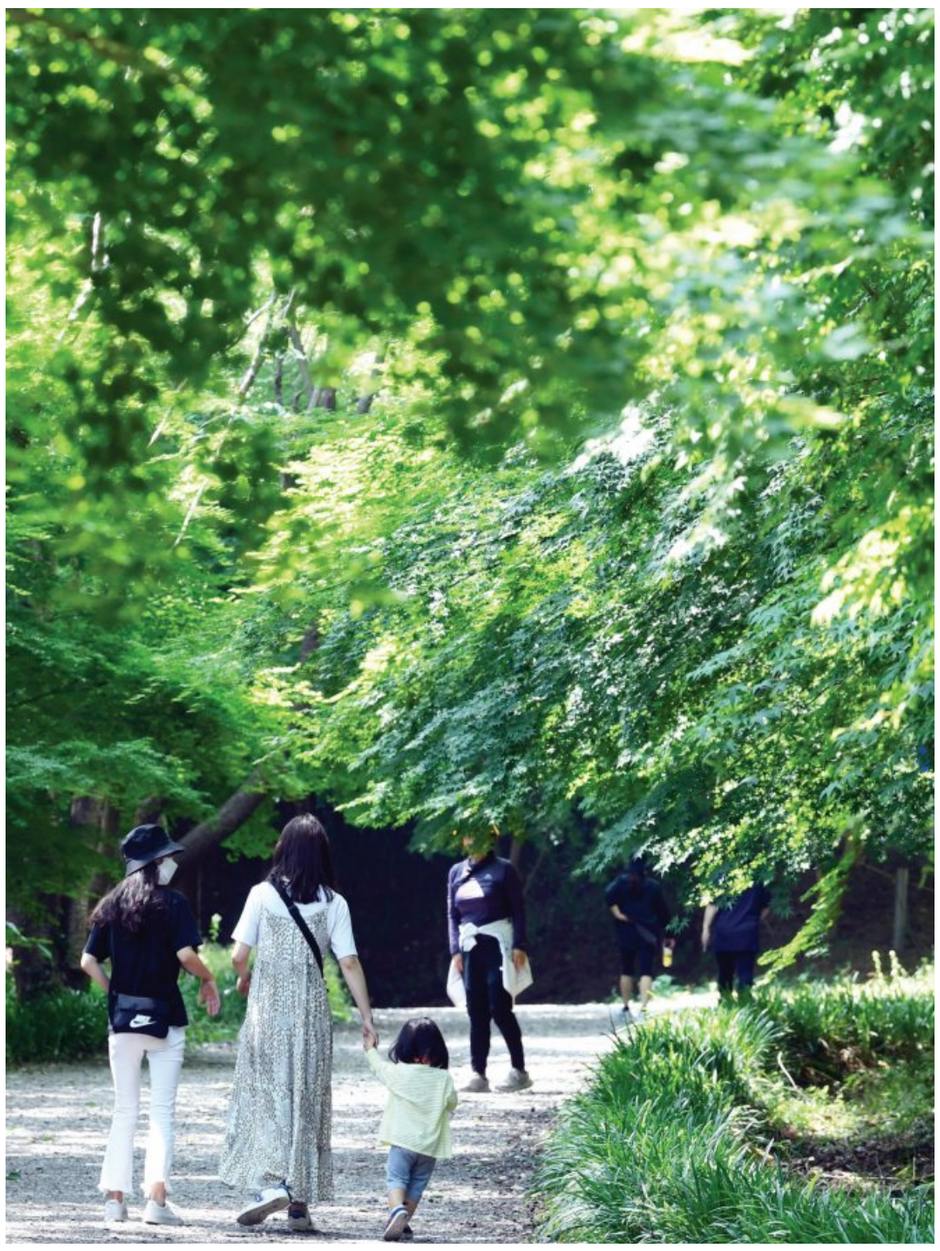

녹음 속으로 산책 12일 오후 가족단위 등산객들이 녹음이 우거진 화순군 옛 너릿재 산길을 걷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생태 교란 '늑대거북' 도심 호수서 발견

광주 북구 운암제서 외래종 '커먼 스내핑 터틀' 포획

천적 없고 포유류까지 먹어치워…사람 공격 가능성도

광주 도심에 있는 한 호수에서 민물 최대 포식자로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늑대거북'이 포획됐다.

최재혁 전남대 생물학과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운암제에서 늑대거북 1마리를 통발로 포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연구원은 생태계 교란 거북 포획 방법을 연구하다 통발에 늑대거북이 잡힌 것을 발견했다. 광주 야생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된 늑대거북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종 '커먼 스내핑 터틀'(common snapping turtle)로, 나이는 10살 이상이며 등갑 길이는 26.4㎝, 무게는 3.264㎏이다. 이 거북은 애완용으로 기르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운암제 내 포획되지 않은 늑대거북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늑대거북은 민물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꼽힌다. 잡식성으로 어류·양서류·파충류·절지동물뿐 아니라 물 밖에 있는 소형 포유류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더구나 악어 등 대형 맹수가 없는 국내에서는 천적조차 없어 생태계 먹이사슬을 해칠 위험이 크다.

또 늑대거북은 먹잇감을 직접 사냥하는 습성을 가진데다 성격도 사나워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발톱이 길고 날카로우며, 턱 힘이 강력해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힐 수 있다.

늑대거북은 북미에선 사이테스(CITES·국제멸종위기종) 3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북미 외 국가에서는 규제없이 거래할 수 있다. 국내 펫샵에서는 연령에 따라 마리당 4만~50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늑대거북은 어릴 땐 등갑 길이가 3~5㎝에 불과하지만 성체가 되면 40~50㎝까지 자라 키우기 힘들어진다. 또 사료값, 냄새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늑대거북의 사촌뻘인 악어거북이 광주호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악어거북은 늑대거북보다 몸집이 2배가량 크며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돼 국내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종이다.

늑대거북 한 마리가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운암제에 설치한 통발에 붙잡혀 있다. 〈최재혁씨 제공〉

최 연구원은 "늑대거북은 2014년 국립생태원이 전국조사를 벌인 이후 지금까지 10여차례 발견됐으며, 지난해부터는 4건이 추가 발견될 정도로 자주 목격된다"며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외래종을 함부로 방사하지 않아야 하고 거북 등을 입양하기 전에는 사육 환경과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왜?

법원 "'사고 회피 가능성' 희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 범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시속 30㎞를 초과해 가해 차량이 달렸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한 데다, 도로변에 줄지어 세워졌던 불법 주정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사고 회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편도 1차선 도로, 횡단보도 미설치)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로 뛰어나오던 B(8)양을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행 방향 왼쪽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도로에 뛰어든 B양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를 재연한 경찰 수사 보고서에 'A씨가 정차 차량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던 B양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 가운데로 뛰어든 B양을 발견한 즉시 제동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된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몰던 차량 속도가 느려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과 회피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